

## 団体退職保險 解約後

### 재가입 稅務유의 사항은?

**問** 자금사정으로 이미 가입된 団体 退職保險을 상반기 중解約하고 하반기에 재가입할 예정인데 이에 따른 회계처리방법 및 稅務上 유의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단체퇴직보험의解約과 재가입시의 기준적 회계방침 및 회계처리사례는 어떠한지요? (2) 종업원의 퇴직시에 퇴직금의 지급순위는? (3) 稅法上 損金으로 인정되는 단체퇴직보험료의 한도는? (釜山 L 의료법인)

**答** (1) **■ 제도적 취지:** 法人稅法 시행령 제13조에서 損費로 인정되는 団体退職保險制度의 취지는 사용인의 퇴직금을 社外의 보험회사에 자금적립을 유도함으로써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 회계처리의 기초:** 단체퇴직보험료로 납입할 금액은 자산으로 처리함과 동시에 이 금액 상당액을 비용으로 계상합니다. 이때 비용으로 계상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년도말 현재 전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추계액에서 이미 설정된 퇴직급여충당금과 단체퇴직급여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동시행령 제13조 2항 참조) 이때의 회계처리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借) 退職保險預置金 ××× (貸) 現金 · 子金 ××× 支給手数料 ×××

(借) 団体退職給與充當金轉入額 ××× (貸) 団体退職給與充當金 ××× (의료원가 또는 일반관리비)

上記 회계처리방식은 실질적으로 对照計定방식의 회계처리로서 法人稅法 시행령에서 요구하는 費用計上에 한한 損金認定에도 부합하는 동시에 企業會計를 만족시키게 됩니다.

**■ 団体退職保險의解約시:** ① 단체 퇴직보험에解約시의 거래는 資金去來에 속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使用人에게 퇴직시 지급해야 할 퇴직금으로써 충당해야 하는 退職給與充當金 (団体退職給與充當金

포함)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쳐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② 그러므로 회사가 이미 가입한 단체퇴직보험 (퇴직보험예치금)을解約하는 경우 이미 설정된 단체퇴직급여충당금은 그 성격이 일반퇴직급여충당금과 동일한 부채성 충당금이므로 전기에 잘못 계산되어 과다 설정된 경우가 아닌 한 団体退職給與充當金を 원칙적으로 還入해서 안되는 것이므로 退職給與充當金으로 計定對替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団体退職保險의 재가입시:**解約 및 재가입에 따른 損益計上이 세법상 필요한 경우에는 당기의 적정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期間損益을 왜곡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特別損益으로 회계처리 할 수 있습니다. 1) 再加入한 단체퇴직보험금액 ≥ 解約한 단체퇴직보험금액

解約年度에 동일한 금액 또는 초과하는 단체퇴직보험을 재가입한 경우에는 還入된 금액은 特別利益으로, 재가입한 보험료 拂入額은 특별손실로 計上할 수 있습니다.

(解約時: 上半期)

(借) 단체퇴직보험충당금: 2억원 (貸) 特別利益 中 단체퇴직보험 충당금환입익: 2억원

(借) 현금 · 예금: 2억원 (貸) 퇴직보험 예치금: 2억원

(再加入時: 下半期)

(借) 퇴직보험예치금: 3억원 (貸) 현금 · 예금: 3억원

(借) 特別損失 中 단체퇴직보험충당금 전입: 3억원 (貸) 단체퇴직보험 충당금: 3억원

2) 再加入된 단체퇴직보험금액 < 解約한 단체퇴직보험금액

解約年度에解約금액에 미달하는 단체퇴직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再加入額과解約금액의 차액의 단체퇴직보험충당금은 일반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정 대체해야 합니다.

(事例: 퇴직보험예치금 및 단체퇴직보험충당금을 4억원을解約한 후 他 보험회사에 3억원 再加入 경우)

(解約時: 4억원)

(借) 현금·예금: 4억원 (貸) 퇴직보험예치금: 4억원

(借) 단체퇴직보험충당금: 4억원 (貸) 퇴직급여충당금: 1억원 특별이익중 단체퇴직보험충당금환입액: 3억원

(再加入時)

(借) 단체퇴직보험예치금: 3억원 (貸) 현금·예금: 3억원

(借) 특별손실중 단체퇴직보험전입액: 3억원 (貸) 단체퇴직보험충당금: 3억원

3) 解約年度와 再加入 年度가 다른 경우

해약시 해약된 금액에 상당하는 단체퇴직급여충당금을 일반퇴직급여충당금계정에 대체 처리하고 재가입시는 일반퇴직급여충당금을 다시 단체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정대체 하여야 합니다.

(解約時: 1985년도)

(借) 현금·예금: 4억원 (貸) 퇴직보험예치금: 4억원

(借) 단체퇴직보험충당금: 4억원 (貸) 퇴직급여충당금: 4억원

(再加入時: 1986년도)

① (借) 퇴직보험예치금: 4억원 (貸) 현금·예금: 4억원

② (借) 특별손실중 단체퇴직보험충당금전입: 4억원 (貸) 단체퇴직보험충당금: 4억원

③ (借) 퇴직급여충당금: 4억원 (貸) 특별이익중 퇴직급여충당금환입액: 4억원

上記 ②③의 회계처리는 검토를 요하는 分介로 思料되으나 稅法上 필요한 경우로 당기의 적정손익과 기간손익을 왜곡표시하지 않기 위한 分介로 사료됩니다.

■ 稅務上 처리: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한 경우에는 해약한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益金에 산입하는 것으로서 단체퇴직급여충당금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대체한 경우는 益金算入 유보처분 되었다가 재가입시의 단체퇴직보험 보험료는 損金算入 되는 동시에 특별이익중 퇴직급여충당금환입액은 損金追認 (留保) 처리를 하게 됩니다. (法人 1264, 21 ~ 1076, 1984. 26. 참조)

(2) 団体退職保險에 가입한 醫療法人의 使用人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써 지급할 퇴직금은 먼저 보험회사에서 수령한 退職保險金으로 충당하고 이 보험금으로 未達할 때에는 그 부족액은 稅法上 損金으로 설정한 退職給與充當金에서 먼저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보험회사로부터 団体退職保險金을 수령하였다. 하여 이를 법인의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益金에 산입하지는 않습니다. (직세 1234 - 1687. 77. 7.4 참조)

(3) 団体退職保險料의 損金範圍額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표와 같습니다.

団体退職保險料 損金範圍額

